

1. 개정이유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·공포에 따른 후속조치

2. 주요내용

기본계획 공표방법 규정(안 제2조의2)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‘기본계획’)을 수립한 때 해당 사항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‘20년 9월)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2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공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</u>